

국가배상 신청 안내문

□ 지방재정공제회 보험처리 안내

-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여 영조물하자로 인한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, 빠른 처리를 원하시면 본 심의회에 배상신청에 앞서 지방자자장공제회 보험처리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♣ 국가배상심의제도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<u>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외부위원(판사, 변호사, 의사 등)이 참여하는 심의회에서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</u>하여 책임이 인정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.
- ♣ 국가배상심의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손해를 야기한 행정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배상여부만을 판단하는 심의기관입니다.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사결과가 저희 심의회에 도달해야 심의할 수 있어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며, 배상 역시 해당 행정기관에서 하게 됩니다.
- ♣ 신청서는 신청인의 <u>주소지·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</u>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 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♣ 유리한 배상결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<u>신청서에 본인이 겪은 사고에 대하여 최대</u> 한 상세히 설명을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<u>객관적 자료를 많이 제출</u>하여 주 시는 것이 필요합니다.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♣ 국가배상심의와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은 절차 진행상 서로 방해 되지 않습니다.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배상심의회에서는 비용이들어가는 감정이나 검증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<u>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로 입증이 불확</u>실하면 기각결정이 나오게 됩니다.
- ♣ 아래 안내를 참조하여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빠짐없이 충실하게 제출하시고 향후 좋 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.

1. 국가배상 신청대상

-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
- 도로·하천 등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
 - ◆ 공무원의 과실로 보기 어려운 사안일 경우에는 **법원에 소송을 제기**하는 것이 효 과적임(예를 들면, <u>앞서 가던 자동차가 떨어뜨린 낙하물 등으로 인한 손해는 공무</u> 원의 과실로 보기 어려움 등)

2. 배상신청서 작성

- ♣ 신청서의 각 빈 란을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고, 다음의 유의사항을 지켜주시면 신속하고 유리한 배상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- "신청인" 내지 "피해자"란에 대하여
 - 통상 사고(피해)를 입은 피해자가 신청인
 - <u>다른 사람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</u>, 자동차에 대한 재산상 피해자는 운전자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증상 명의인임. <u>피해자란에 자동차등록증상 명의인을 기재</u> ※ <u>운전자가 위임받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</u>, 위임인(자동차명의인)의 <u>위임장 및 인</u> <u>감증명서(또는 신분증 앞뒷면 사본)를 첨부</u>하고 신청인란에는 운전자를 기재하고 피해자란에 자동차등록증상 명의인을 기재)
 - 그 밖에 사고를 입은 당사자(피해자)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<u>위임장 및</u> 인감증명서(또는 신분증 앞뒷면 사본) 첨부하고 피해자란과 신청인란에 피해자를 기재
 - <u>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</u>,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법원의 법정대리인 결정문 또는 후견인 결정문) 제출
 - <u>신청인 및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</u>, 신청인란 및 피해자란에는 대표이사가 아닌 <u>법인명</u> 칭을 기재하여야 함
 - <u>신청인 및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</u>, 신청인란 및 피해자란에 <u>"○○○ 외 ○명"</u>으로 기재 후 첨부된 별지에 신청인 및 피해자 전원의 인적사항 기재 요망
 - <u>자동차 명의인이 공동명의인 경우</u> 피해자는 공동명의인 모두이므로, 공동명의인들이 공동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며, 공동명의인 중 1인이 나머지 명의인을 대리하여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(또는 신분증 앞뒷면 사본)를 첨부하고 피해자란과 신청인란에는 공동명의인 모두를 위의 수인인 경우와 같이 기재

○ "**사고개요**"란에 대하여

- 이 부분은 첨부된 **사고개요서에 자세히 기재**하시는 것이 신청인에게 유리합니다.
- 사고 장소의 정확한 행정구역명을 인터넷 및 행정청에 확인하고 기재 요망
- 가해자 소속은 해당 사고 장소 혹은 공무원을 관리, 감독하는 행정청 및 소속과 기재

- 사고 일시 및 **시각**(예 : 오전 06:00경, 저녁 18:00경 등)을 기재 요망
- 사고 당일의 **기상**(예: 일몰 후, 비가 옴, 눈 내림 등)을 기재 요망
- 사고 내용은 최대한 상세하게 6하 원칙(누가, 언제, 어디서, 무엇을, 어떻게, 왜)에 따라 기재하되, 최소 10줄 이상이 되도록 자세히 작성하여야 신청인에게 유리합니다.
-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번호 및 차종 기재 요망
- 사고 자동차의 진행방향,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경위 기재 요망
- 도로파손으로 인한 사고시 포트홀(구덩이)의 깊이와 크기를 cm단위로 기재 요망
- 기타 낙하물로 인한 사고시 **낙하물의 길이와 크기를 cm단위**로 기재 요망
- 사고로 인한 피해 또는 <u>파손 부위(예 : 자동차 운전석 앞 타이어 및 휠, 자동차 조수</u> 석 뒤 타이어)를 명확히 기재 요망
- 사건당일(야간 사고 발생시 그 다음 날) 민원을 제기하였는지 여부, 파손 후 바로 정 차하였는지, 보험회사를 부르지 않았다면 왜 부르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사고개요 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영조물관리기관에 신고한 일시, 신고받은 공무원의 부서·직급·성명 기재 요망
- 만일 사고 목격자가 있다면 동인의 이름과 연락처 및 목격 경위 기재 요망
- "신청액"란에 대하여
 - 각 해당란에 본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뒤, 합계란에 총액을 기재 ※ 모든 금액은 객관적 증빙자료에 기초한 금액이어야 하므로 영수증 반드시 첨부
 - 위자료는 치료일수(통원치료 포함) × 최대 2만원 (단, 사망 또는 장해발생의 경우 별도 의 기준에 따름
 - 휴업배상 또는 위자료 인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액란에 기재
- "위 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"란에 대하여
 - 보험회사나 가해자 기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고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기재
 - <u>배상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로 인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</u> 금액 만큼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(인보험은 제외)
 - 허위 기재시 형사상 사기죄 등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.

3. 구비서류 제출

○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심사 기간이 장기화 되는 동시에 심의회에서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〈공통 구비서류〉

- ① 국가배상신청서
- ② 신청인의 <u>주민등록등본(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)</u>, <u>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</u> 증, 기간만료 전의 여권 등) 사본(앞뒷면)을 첨부
 - (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위임인과 대리인 모두의 주민등록등본(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) 인감증명서(또는 신분증 앞뒷면 사본) 각각 첨부).
- ③ 사고 장소의 사진(현장사진 및 현장약도-인터넷지도 활용) 및 사고 후 사진(자동차의 경우 파손부분, 자동차번호를 파악할 수 있게 자동차 전체사진 포함)을 컬러로 A4용지에 붙여서 제출하면 국가배상심의에서 신청인에게 아주 유리하게 작용합니다. (사진을 직접 제출함과 동시에 파일을 CD에 담아 제출하시면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)

〈구체적 사안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〉

- **→ 자동차 파손시** : ① 자동차등록증 사본,
 - ② 보험회사 긴급출동확인서 또는 렉카차 출동확인서(출동한 경우 제출),
 - ③ 블랙박스 영상(있는 경우 CD 혹은 USB로 제출 가능)
 - ④ 민원처리대장 및 출장복명서 또는 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교통사고사실 확인원(사고 후 관리청에 <u>민원을 제기한 경우 민원을 제기하였음을 증</u> 명할 수 있는 서류),
 - ⑤ **자동차 점검·정비 명세서**(구체적인 수리 내역 포함되어야 함. <u>반드시</u> 영수증과 함께 제출. 미제출시 신청액이 일부 기각될 수 있음.),
 - ⑥ 자동차 **수리비 영수증**(신용카드 매출전표, 국세청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 등이 가능. 수기식영수증, 간이영수증은 정당한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)
 - ⑦ 수리 후 사진(파손되었던 부분 사진, 자동차번호를 파악할 수 있 게 자동차 전체사진 포함하여 컬러사진을 A4용지에 붙여서 제 출)
 - **⑧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(보험증권)** 사본,
 - ⑨ 자차가입자의 경우 중
 - ☞ 자차처리를 한 경우는 **보험금지급내역확인서**,
 - ☞ 자차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제목은

할인할증 등급확인서/요율 등급확인서/적용율 등급확인서/무사고증 명서/사고내역서 등 보험사마다 상이(위 서류 중 하나를 반드시 제 출하되 사고유무 및 자차처리 여부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)

- **↑ 신체 상해시** : ① **진단서•소견서 및 진료차트**(상해일자 및 진단일자 기재되어 있을 것)
 - ② 치료비 명세서(통원일자 확인용)
 - ③ 치료비 영수증(병원비, 약제비 등),
 - ④ **입•퇴원 확인서**(입원한 경우 제출),
 - ⑤ 구급차출동확인서(출동한 경우 제출),
 - ⑥ 골절 사고시 X-레이 사진 둥
 - ※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 신체장해의 종류를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, 재직증명서(근무기간 기재되어 있을 것), 월 수입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(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의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구청장·시장·군수와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급여액증명서나 기타 공신력 있는 월수입 증명서. 사고발생 직전 3개월분이 표시되어 있을 것)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※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, 장례비 영수증, 가족관계증명서, 재직증명서 (근무기간 기재되어 있을 것), 월 수입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(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의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구청장·시장·군수와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급여액증명서나 기타 공신력 있는 월수입 증명서. 사고발생 직전 3개월분이 표시되어 있을 것)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국가배상은 과다·허위청구 등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<u>비용지출 후의 사후지급을</u>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, 일단 <u>수리를 마친 후 그 영수증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</u>
- 위의 서류 외에 사고의 내용 및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, cctv영상, 목격자 진술서, 112 출동확인서,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(자료제출에 제한 없음)
- <u>사진 및 영수중</u> 등은 신청서 접수과정에서 분실되거나 신청서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<u>원</u> <u>본(컬러)을 A4용지에 부착하여 해당자료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여 제출</u>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사고목격자가 있는 경우 **목격자가 직접 작성한 "<u>목격자 확인서</u>"에 목격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목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감을 날인** 받아 목격 자의 <u>인감증명서(또는 신분증 앞뒷면 사본)</u>와 함께 제출하십시오.
- 일일 실제수입(휴업배상)을 청구하는 경우 직업 및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재직 증명서(근무기간 기재되어 있을 것), 월 수입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(주소지 관할세 무서장의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구청장·시장·군수와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급여액증

명서나 기타 공신력 있는 월수입 증명서. <u>사고발생 직전 3개월분이 표시되어 있을 것</u>)를 제출하여 소득의 감소 사실을 입증하여야 신청인에게 유리합니다.

(부상으로 인한 휴업손해의 배상은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)

○ 부동산 관련 손해의 경우 토지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.

○ 서류 편철 방법

- 국가배상신청서를 위로 하여 공통서류 → 추가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

4. 유의사항

- 국가배상신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**3년**, 불법행위 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.
- 배상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로 인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금액 만큼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없으므로, 보험사에서 배상을 받고도 이중으로 청구하거나 손해액을 부풀려서 과다청구하는 경우,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같은 사안으로 이미 재판을 받았거나 재판 중인 경우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며, 가해자 측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손해가 전보된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취하하여야 합니다. 손해 전보를 받았음에도 국가배상신청을 하거나 취하하지 않는 경우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신청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,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13조 제8항에 의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.
- 부득이 본 광주지구배상심의회에서 <u>기각(일부기각)되더라도 법무부에 재심을 청구 할 수</u> 있으며 다시 기각되면 법원에 일반 민사소송 제기로 피해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국가배상 신청 접수 후 일반적으로 3~4개월이 지나면 배상여부에 대한 결정 정본 등이 송달됩니다. 다만,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청의 접수순서대로 심의를 하므로 지체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심의결과가 나오면 전화 등 유선상 결과 통보는 이루어지지 않고, 신청인의 주소지로 결정서가 등기 송달됩니다. 따라서 배상신청 후 주소지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. ☆변경신고는 062-231-3261

5. 신청방법 (**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**)

★주 소 : 광주 동구 준법로 7-12 광주고등검찰청 사건과 국가배상담당자 앞

+우편번호 : 61441

↑전화번호 : 062-231-3261 국가배상담당자
